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672 발의연월일: 2023. 8. 7.

발 의 자:유기홍·서동용·전재수

김철민 · 강민정 · 윤영덕

최기상 · 김영호 · 민형배

안민석·조오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.

실제로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 모의 과도한 민원을 81.2%의 교사들이 여러 번 겪었다고 답했음. 교 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,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0조의3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
	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,
	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
	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
	률」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
	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
	<u>하여야 한다.</u>